

2024년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

안동시에서는 2024년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4. 3. 13.

안 동 시 장

1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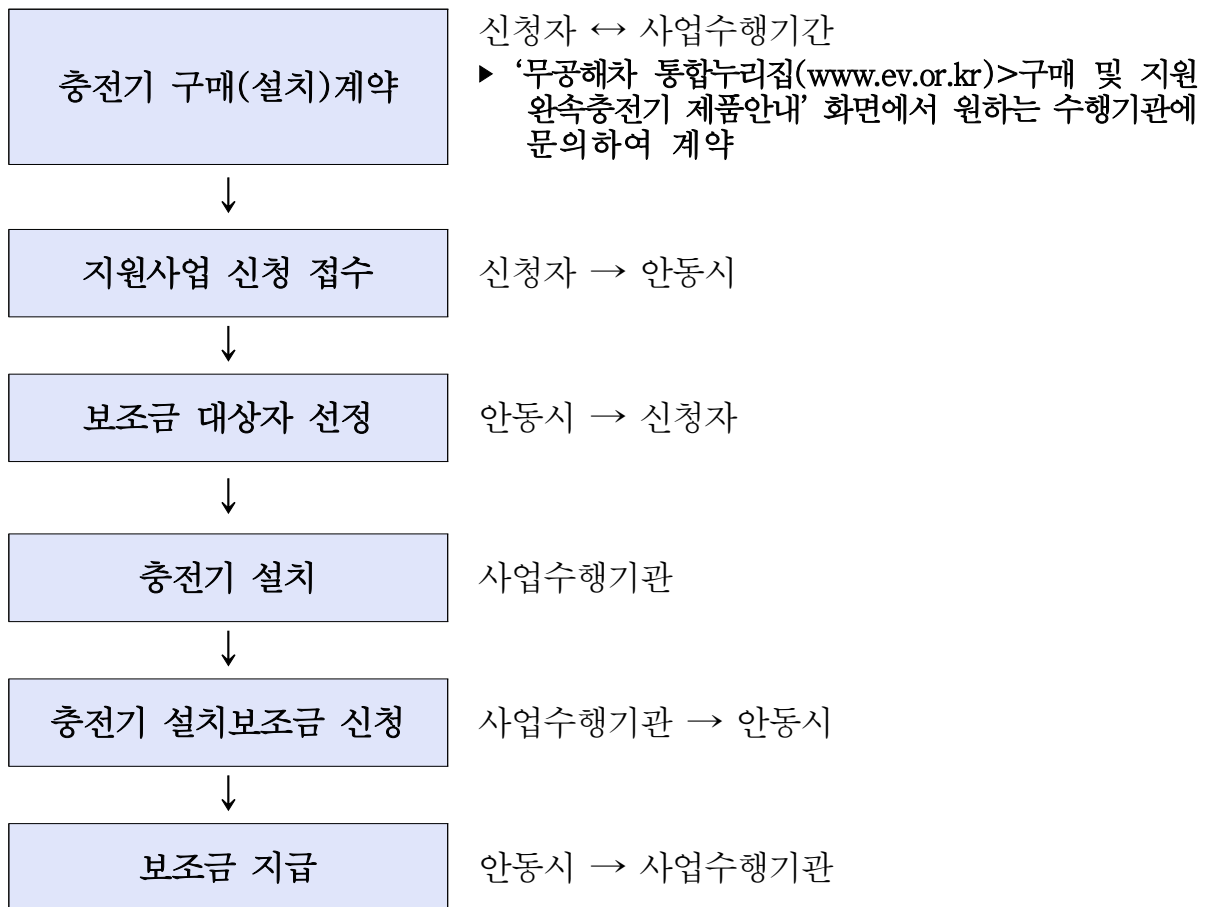
- 신청기간 : 2024. 03. 18.(월) ~ 2024. 03. 29.(금) 18:00까지
 - 신청기간내 지원물량 미달인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연장
- 사 업 비 : 17,989천원(도 5,369 시 12,529) ※자부담 별도
- 사 업 량 : 완속충전기 18기(충전기 종류·수량별 지원금 상이해 변동 가능)
- 지원금액 : 최대 100만원/기(충전기별 차등 지급)
- 지원대상 : 전기자동차 구매자(또는 ‘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)
중 개인 또는 기업(법인) 중 안동시 관내의 거주지 또는
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

2 신청자격

- 안동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전기자동차를 소유한(또는 ‘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) 개인 또는 기업(법인) 중 안동시 관내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

-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타 보조금 미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
 - 초소형 전기자동차 보유자는 과금형 휴대용충전기에 한함
 - 안동시에 지방세, 환경개선부담금, 과태료 체납이 없는 자에 한함
 - 지상 설치 우선 지원(지하주차장 설치 지양)
- 취약계층(장애인,차상위 이하계층),상아·독립유공자 ,다자녀 가구 우선 지원

3 지원사업 추진절차



4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24. 03. 18.(월) ~ 03. 29.(금)
- 신청시간 : 09:00 ~ 18:00 ※ 공휴일(토·일요일 포함) 제외
- 신청방법 : 방문 접수(서면)
- 접수 및 문의처 :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(명륜동), 안동시청 환경관리과(보민관 6층)
(☎054-840-6187)

○ 제출서류(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)

(공통) 제 출 서 류

- ①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[서식1]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 1부 [서식2]
- ③ (개인) 주민등록초본, (사업자) 사업자등록증
- ④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
- ⑤ 설치희망지 등기부등본 1부
- ⑥ (신청자와 설치희망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)
 - 부지사용 승낙서[서식3],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⑦ 충전기 설치계약서
- ⑧ 사업수행대상 적격 확인 서류

(우선순위) 제 출 서 류

차상위 이하 계층	차상위 증명서(수급자 증명서)
장애인	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
국가유공자(상이, 독립 등)	국가유공자 등록증
다자녀(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)	가족관계 증명서

5 대상자 선정

- 신청자 중 선정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연락
 - 문자메세지(SMS) 또는 공문 발송
- 선정기준

순 위	지 원 대 상
1	우선순위 해당자 [취약계층(장애인, 차상위 이하> 상이·독립유공자> 다자녀가구)]
2	충전기를 개방(공동사용)하는 경우(공동주택 포함)
3	사업장
4	단독주택

- 지하주차장 설치, 완속충전기 기설치된 장소는 최하위 순위로 조정
- 선정순위내 동순위자는 전기자동차 보유대수 순으로 선정
- 신청기간 내 지원물량 미달인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접수순으로 선정
- 선정 대상자는 희망 제조사와 충전기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액을 제외한 충전기 설치대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

6 보조금 지원 충전기 (1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가능)

-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(ev.or.kr)에 등록된 수행기관의 충전기
- 경상북도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
- 기타 비공용 충전기 전문 생산 업체에서 제작된 충전기
 - *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
 - * KC인증서
 - * 전기안전인증서
 - * 책임배상물 보험 가입
 - * 국내제조 제품

7 보조금 지원단가

- 지원금액
 - 완속충전기 구매·설치 비용의 50% 한도 내에서 지원

(단위 : 만원/기)

구 분		1기	2~5기	6기 이상
완속충전기 (C타입, AC)	11kW이상	100	90	75
	7kW ~ 11kW미만	90	80	70
키오스크 충전기		90(2기)		
전력분배형 충전기(7kW)		70(2기)		
과금형콘센트		30		

-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, 보조금 한도 초과 비용은 설치희망자 등이 부담
- 키오스크 충전기는 기본 2기를 지원하며, 1기 추가 시 추가보조금 45만원 지원

- 전력분배형 충전기(7KW)는 최대 2기까지 전력분배할 때 지원하며, 기본2기에 70만원 지원
-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기존 전기배선을 활용한 단순교체가 가능함. 단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과금형콘센트 운영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정보의 교환, 전력 분배 또는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.
-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모두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여야 하며, 하나의 차단기에 최대 2기의 과금형 콘센트만 설치 가능

8 사업수행의 대상 (1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가능)

-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전사업자와 충전기 제조사로 한국환경공단에 충전기 제품이 등록된 사업자
 - *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(ev.or.kr)에서 열람 가능
- 일정 자격기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·납품할 수 있는 충전기 제작사
 - *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
 - * KC인증서
 - * 전기안전인증서
 - * 책임배상물 보험 가입
 - * 국내제조 제품

9 보조금 지급

- 지급 신청기한 : **2024. 11. 29.(금)까지**
 - 지급신청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포기로 간주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
 - (방문)18:00까지, (등기우편)신청기간 내 소인분까지 인정)
- 제출서류

보조금 지급 제출서류

- ①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 신청서 [서식4]
- ②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서약서 [서식7]
- ③ 위임장 [서식5]
- ④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설치완료 확인서 [서식6]
- ⑤ 사업자등록증
- ⑥ 하자보증서
- ⑦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(검사) 결과서
- ⑧ 세금계산서
- ⑨ 통장사본

9 기타 준수사항

- 충전기 설치장소는 안동시 관내만 가능
- 충전기 설치장소는 이면도로 및 타인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장소가 아닌 적합한 주차공간이어야 함
- 개방(공용사용) 충전기의 경우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어야 함
 - 현장 확인을 통해 개방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 부지가 개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수행기관은 「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(경상북도)」에서 정하는 현장조사, 설계도서 작성, 설치공사 등 절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함
- 설치한 충전기는 원칙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유지·관리 등의 책임이 있으나, 충전기 설치 후 최소 2년간 제품하자 등 사후품질 책임은 충전기 제조사에 있음
- 충전기 사용요금은 사업수행기관이 공공완속충전기 사용요금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
- 충전시설 소유자가 설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안동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안동시는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. 다만, 천재지변, 화재,

건물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

<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(%)>

사용기간	6개월 미만	6개월 ~ 12개월 미만	12개월 ~ 18개월 미만	18개월 ~ 24개월 미만
환수율(%)	70	50	30	10

-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하며,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 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
-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대상여부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충전기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, 충전기 수량, 제품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안동시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
-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희망자에게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
- 구조물 및 제품의 A/S 주체는 사업수행기관이므로 신청자와 계약체결 시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함
- 국가 또는 한전의 충전기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며, 추후 중복 신청 발견 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
- 충전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안동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사업수행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
-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위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「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(환경부)」, 「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설치 운영 및 보조금 업무처리지침(경상북도)」, 아 동시 환경관리과의 의견을 따름
- 지원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었으나 개인사유로 지원사업을 포기할 경우 ‘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포기서’[서식8]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전기자동차 관련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위탁 · 제공 동의서

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)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을 하고자 합니다.

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, 동의 여부를 체크,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[필수]

[수집 ·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]

· 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신상사항 등)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

[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]

·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

[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·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,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2.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[필수]

[위탁·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]

· 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신상사항 등)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

[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]

·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자 (사업자명:)

[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]

· 환경부, 한국환경공단, 한국자동차환경협회

[개인정보를 위탁·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]

· (충전기 설치사업자)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

· (환경부, 한국환경공단, 한국자동차환경협회) 충전기 설치실적, 전산처리 등 관련 자료 작성에 이용

[개인정보를 위탁·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·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본인은 본 “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”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 : (인)

[서식 4]

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 신청서

신청자 (사업수행기관)		대표자	
주 소		연락처	
설치장소		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주택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장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
		도로명주소	
충전기 설치내역	모델명	충전기 종류 (설치대수)	충전기 가액 (C=A+B)
		(기)	자부담(A)
			보조금(B)
보조금 입금계좌	은행명		예금주명
	계좌번호		
	지급요청액	금 원 (₩)	
2024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안동시장 귀하		2024년 월 일 신청자 : (인)	
첨부서류	1. 위임장 6. 하자보증서 2. 설치완료 확인서 7. 세금계산서 3. 사업자등록증 8. 통장사본 4. 청렴이행서약서 5.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		

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안동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귀 안동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안동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~제40조) >

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37조~제40조)

- ▶ 제37조(벌칙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▶ 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 1. 제13조(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)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 2. 제21조(재산 처분의 제한)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- ▶ 제39조(벌칙) ① 제14조(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) 또는 제15조(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)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 1. 제16조(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)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 2. 제16조(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)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 3. 제17조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) 또는 제29조(검사)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
- ▶ 제4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4년 월 일

신 청 자:

(서명 또는 인)

안 동 시 장 귀하

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포기서

1. 포기자

- 성명(기관명) :
-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:
- 주소 :
- 연락처 :

2. 사업 포기 내역

사업명	보조금액(원)	신청 충전기종
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	원	
포기 사유		

상기와 같이 『2023년 안동시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』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, 상기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.

2024. . .

포기자 성명(법인명):

(인)인감도장

안동시장 귀하